회계학 2부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다음은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으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는 모두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한국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1. (주)대한 발행 주식에 관한 자료

(1) (주)한국은 비상장내국법인인 (주)대한 발행 주식을 2025.6.1.에 150,000주(취득원가 ₩1,200,000,000), 2025.10.5.에 50,000주(취득원가 ₩400,000,000)를 매입하였으며, 2025.11.30.에 30,000주를 ₩300,000,000에 매도하였다. (주)한국은 ₩50,000,000을 제25기 손익계산서상 지분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주)대한 발행 주식의 장부가액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2025.12.31. 현재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한 발행 주식 170,000주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1,410,000,000이다.

(2) 2026.3.20. (주)대한은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하고 지급하였다(배당기준일은 2025.12.31.이며 (주)대한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0주임). (주)한국은 배당금 수령액 ₩34,000,000을 (주)대한 발행 주식의 장부가액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 (주)한국은 ₩60,000,000을 제26기 손익계산서상 지분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주)대한 발행 주식의 장부가액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2026.12.31. 현재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한 발행 주식 170,000주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1,436,000,000이다.

2. (주)소한 발행 주식에 관한 자료

(1) (주)한국은 2025.7.1.에 (주)한국의 전무이사인 거주자 갑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인 (주)소한 발행 주식 18,000주를 1주당 ₩20,000에 증권시장 외에서 매입하였다. 2025.7.1. (주)소한 발행 주식의 1주당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30,000이다.

(2) 2026.3.15. (주)소한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 ₩1,000,000,000과 재평가세율 1％ 적용 토지분 재평가적립금 ₩1,000,000,000을 감액하여 배당 하기로 결의하고 지급하였다(배당기준일은 2025.12.31.이며 (주)소한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00주임). (주)한국은 배당금 수령액 ₩18,000,000을 손익계산서상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26.12.31. 현재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한 발행 주식 18,000주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360,000,000이다.

3. 2026.12.31. 현재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30,000,000,000이며, 2026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300,000,000으로 상업어음할인료(매각거래 아님) ₩30,000,000, 구매자금대출이자 ₩100,000,000, 특수관계에 있는 은행 차입금의 이자 ₩170,0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30％, 출자비율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80％ 이다.

물음 1) <자료 1>에 대하여 (주)한국이 제26기에 (주)대한으로부터 받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 및 (주)소한으로부터 받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주)대한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	
(주)소한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9,900,000,000이며, 그 중 ₩2,900,000,000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건당 3만원 이하	건당 3만원 초과	합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2,000,000*1)	₩55,000,000*2)	₩57,000,000
영수증 수취	1,000,000	2,000,000*3)	3,000,000
계	₩3,000,000	₩57,000,000	₩60,000,000

*1) 2026.12.26.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하였으며 대금청구일이 2027.1.10.인 기업업무추진비 ₩5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전액 법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며, 2025.12.27.에 접대하였으며 대금청구일이 2026.1.10.인 기업업무추진비 ₩3,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2026.7.10. 현금으로 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임

3.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3,000,000이며, 본사건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90,000,000이다. 본사건물은 2026.5.2.에 완공되었고 2026.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는 ₩2,0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000이다. 제26기 손익계산서상 본사건물의 감가상각비는 ₩100,000,000이다. 본사건물의 신고내용연수는 20년이며,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4.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직접 생산한 제품(원가 ₩8,000,000, 시가 ₩10,000,000)을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광 고 선 전 비	8,000,000	(대)	제 품	8,000,000
	세 금 과 공 과	1,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

5.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물음 2) <자료 2>에 대하여 (주)세무의 제26기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할 금액과 제26기말 본사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할 금액	
본사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	

<자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우리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1. 2026.4.1. 갑(특수관계인 아님)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250,000,000인 기계장치1(내용연수가 3년 경과됨)을 현금 ₩360,0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며, 기계장치1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으로 ₩360,000,000을 계상하였다.

2. 2026.7.1. 출자임원인 을으로부터 시가 ₩100,000,000인 기계장치2를 현금 ₩150,0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며, 기계장치2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으로 ₩150,000,000을 계상하였다.

3.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제26기 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1의 감가상각비는 ₩112,500,000, 기계장치2의 감가상각비는 ₩30,000,000이다. 기계장치1과 기계장치2로만 구성된 기계장치 항목의 재무상태표상 제26기말 장부가액은 ₩367,500,000이다.

4.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며 내용연수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6년	8년	10년
정률법	0.394	0.313	0.259
정액법	0.166	0.125	0.100

물음 3) <자료 3>에 대하여 (주)우리의 제26기말 기계장치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기계장치의 세무상 장부가액	

<자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나라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1. (주)나라는 제24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제24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60,000,000, 공제감면세액은 ₩16,200,000, 가산세는 ₩700,000이다.

2. (주)나라는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제25기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은 ₩200,000,000이다. 이에 따라 (주)나라는 제24기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최대한 환급받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적법하게 환급받았다.

3. 제26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00,000,000이며,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없다.

4.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24기, 제25기	제26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	1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 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 19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 20 %

물음 4) <자료 4>에 대하여 (주)나라의 제26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자료 5> 다음은 비상장법인인 (주)민국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중부를 흡수합병한 것과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1. 합병 전 (주)민국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주, 1주당 평가액은 ₩12,000이었으며, (주)중부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주, 1주당 평가액은 ₩5,000이었다.

2. (주)민국은 합병대가로 (주)중부의 주주에게 (주)중부의 주식 1주당 (주)민국의 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3. 합병 전 (주)민국의 주주와 보유주식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동해 3,500주, 영리내국법인인 (주)남해 1,500주이다. 합병 전 (주)중부의 주주와 보유주식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서해 1,000주, 거주자 병 1,000주이다. (주)동해와 (주)서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주)남해와 거주자 병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그 외의 특수관계는 없음).

물음 5) <자료 5>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분여 및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주)남해와 (주)서해가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주)남해가 익금에 산입할 금액	
(주)서해가 익금에 산입할 금액	

【문제 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1. (주)한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2.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는 ₩250,000,000이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우량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고, 확정급여채무 및 확정급여형 사외적립자산의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채무 산정내용	금액
①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	₩3,050,000,000
② 퇴직급여지급액	(-)480,000,000
③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 손실)	165,031,000
④ 당기근무원가 및 이자원가	714,969,000
⑤ 확정급여채무 기말잔액	₩3,450,000,000

확정급여형 사외적립자산 산정내용	금액
① 사외적립자산 기초잔액	₩2,950,000,000
② 퇴직급여지급액	(-)350,000,000
③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211,041,000
④ 재측정요소	(-)11,837,000
⑤ 당기 기여금(불입금)	400,796,000
⑥ 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	₩3,200,000,000

3. 당기 중 퇴직급여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관련

(차)	확정급여채무	480,000,000	(대)	사외적립자산	350,000,000
				보통예금	130,000,000

(2) 사외적립자산의 회사불입금(기여금) 관련

(차)	사외적립자산	400,796,000	(대)	보통예금	400,796,000

(3)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및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의 반영

(차)	사외적립자산	211,041,000	(대)	퇴직급여	211,041,000
(차)	퇴직급여	714,969,000	(대)	확정급여채무	714,969,000

(4) 재측정요소의 인식

(차)	재측정요소(OCI)	165,031,000	(대)	확정급여채무	165,031,000
(차)	재측정요소(OCI)	11,837,000	(대)	사외적립자산	11,837,000

4. 세무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의 당기총급여: ₩8,000,000,000

(2)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자의 일시 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4,840,000,000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수리적 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5,000,000,000이다.

(3)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소득처분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	₩2,90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신고조정액)	△₩2,550,000,000	△유보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다음 양식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단, 물음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것) (8점)

(1) 재측정요소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과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구분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자료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 (주)대한은 2026.7.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주)세무를 흡수합병하였다. (주)대한과 (주)세무의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다.

1. 합병 직전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자본금 ₩50,000,000(발행주식총수 10,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 발행가액 ₩6,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이익잉여금 ₩19,000,0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재무상태표상 금액	시가
건물	₩45,000,000	₩40,000,000
토지	120,000,000	250,000,000
기타자산	114,000,000	114,000,000
자산합계	₩279,000,000	₩404,000,000
제부채	200,000,000	-
부채합계	₩200,000,000	-

2. 상기 재무상태표상 금액과 세무상 장부가액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건물뿐이며 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47,500,000으로, 차이 금액은 감가상각시부인 세무조정에 따른 결과이다. 해당 건물의 취득일은 2016.1.1., 취득가액은 ₩100,000,000(신고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20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3. (주)대한이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2026년 감가상각비는 ₩1,000,000이다. 합병 전 (주)대한의 기존 건물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와 동일한 20년이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4. (주)대한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세무의 주식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주)대한은 (주)세무의 지배주주가 아니다.

취득일	취득주식수(지분율)	취득금액 (장부가액과 동일)	합병일 현재 공정가치	평가손익
2024.4.1.	1,000주(10 %)	₩20,400,000	₩21,000,000	₩600,000
2025.5.1.	2,500주(25 %)	₩50,000,000	₩52,500,000	₩2,500,000

5. (주)대한은 (주)세무의 주식 6,5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한국에 대해 합병대가로 (주)세무의 주식 1주당 (주)대한의 주식 1.5주(1주당 액면가액 ₩5,000, 1주당 시가 ₩6,500)의 비율로 9,750주를 발행, 교부하였고 추가로 현금 ₩39,000,000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였다. (주)대한과 (주)한국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주)한국이 취득한 (주)세무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는 ₩7,000이다. 한편 (주)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주)세무의 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전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6. (주)대한의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토지가액을 ₩300,000,000으로 평가한 것을 제외하고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처리함)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3,100,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3,100,000

(차)	건물	40,000,000	(대)	현금	39,000,000
	토지	300,0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73,500,000
	기타자산	114,000,000		제부채	200,000,000
				자본금	48,750,000
				주식발행초과금	14,625,000
				염가매수차익	78,125,000

7.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과세이연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다음의 양식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단, 물음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것) (12점)

(1)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시오. (단, 백분율 기준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예시: 85.45 % → 85.5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1)의 결과에 관계없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주)대한의 2026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상각부인액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건물 상각부인액 기말잔액	

(3) (1)의 결과에 관계없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시 (주)한국이 인식할 의제배당액을 제시하시오. (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무시할 것)

의제배당액	

(4) (1)의 결과에 관계없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주)대한의 장부상 합병회계처리 중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문제 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각 자료에서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6년 금융소득 및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1. 갑의 2026년 금융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24.3.1.에 발행된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국채의 원금증가분 ₩1,000,000과 이자 ₩2,000,000을 수령하였다.
 (2) 2022.10.1.에 발행된 만기 10년의 장기채권에서 이자 ₩4,000,000을 수령하였다.
 (3) 2021.6.12.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과 관련하여 2026.6.12.에 ₩15,000,000의 보험금을 만기환급 받았다. 보험계약기간 중 납입보험료는 ₩13,000,000이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은 ₩1,000,000이다.
 (4) 2026.1.1.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3,000,000을 수령하였다.
 (5)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금 ₩4,000,000을 수령하였다.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장에서 2026년 출자공동사업자(사업연도: 2026.1.1 ~ 2026.12.31.)의 배당금 ₩6,000,000을 2027.2.25.에 지급받았다.
 (7) 자기주식소각이익(주식소각일: 2025.2.27., 소각 당시 시가는 주당 ₩900이고 취득가액은 주당 ₩1,000임)의 자본전입(자본전입일: 2026.6.10.)에 따른 무상주 2,000주(주당 액면가액: ₩500)를 (주)대한으로부터 수취하였다.
 (8) 비상장법인 (주)민국으로부터 ₩30,000,000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해당 잉여금의 처분결의일은 2026.2.15.이었다.

2. 갑은 금융소득 이외에 사업소득금액이 ₩48,000,000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액은 ₩25,000,000이다.

3. 소득세 기본세율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0,000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0,000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5,360,000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0,000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0,000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 ~ 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8점)

구분	금액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금액	①
금융소득금액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③
배당세액공제액	④

<자료 2>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거주자 갑의 2026년 주택임대현황이다.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비고
주택A	2025.5.1. ~ 2027.4.30.	₩600,000,000	₩100,000	등록임대주택
주택B	2026.1.1. ~ 2026.12.31.	₩200,000,000	₩700,000	미등록임대주택
주택C	갑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			

1. 주택A와 주택B의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주택A의 12월분 임대료는 12월 말일에 수령하지 못하고 2027.1.15.에 수령하였다.

2. 보증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주택A는 수입배당금 ₩600,000, 주택B는 유가증권처분이익 ₩3,000,000이 있다. 운용수익은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해당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였다.

3. 2026년 주택임대소득금액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0,000,000이며, 종합소득공제액은 ₩5,000,000이고,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공제·감면세액은 ₩500,000이다.

4. 각 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전용면적 40m^2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한다.

5.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간 3%이다.

6. 소득세의 기본세율표는 <자료 1>을 이용한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 ~ ②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6점)

구분	금액
주택임대소득금액	①
종합소득결정세액	②

<자료 3>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6년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자료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대한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갑(남성 48세)의 2026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단, 갑과 (주)대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1) 갑은 (주)대한으로부터 월 ₩4,000,000의 기본급여를 12회 수령하고, 분기마다 ₩2,000,000씩 4회에 걸쳐 상여금을 수령하였다.

(2) 갑은 2026.3.27.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에 의해 ₩5,000,000을 상여로 수령하였으며, (주)대한의 2025년(사업연도: 2025.1.1 ~ 2025.12.31.) 법인세 신고시 갑에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금액 ₩3,000,000이 있다.

(3) (주)대한이 직접 임차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월 적정임대료 ₩1,000,000에 해당하는 주택을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4) 갑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직무발명보상금 ₩10,600,000을 수령하였다.

(5) (주)대한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위하여 월 ₩100,000을 보험사에 12회 지급하였다.

(6) 갑의 배우자가 2026.12.25.에 출산함에 따라 (주)대한으로부터 2026.12.30.에 출산일시 지원금 ₩5,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8세인 차남의 보육과 관련하여 매월 ₩200,000을 12회 수령하였다.

(7) 갑은 사내교육을 위한 강의교재를 작성하고 ₩1,000,000을 수령하였으며,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중학교의 특강료 ₩2,000,000을 수령하였다.

(8) 갑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4,000,000의 사용료를 받았으며,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된 경비는 없다. 또한, 갑은 계약상대방이 주택매매계약을 위약함에 따라 받은 주택매매 계약금 ₩3,000,000을 2026.10.5.에 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9) 근로소득공제액 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2.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

(1)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생년월일	연간 소득 내역	비고
배우자	1983.2.3.	총급여액 ₩5,000,000	근로소득만 있음
모친	1955.10.15.	공익신탁이익 ₩1,500,000	
장남	2006.10.3.	소득없음	대학생
차남	2018.9.8.	소득없음	초등학생, 장애인
장녀	2026.12.25.	소득없음	

(2) 갑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 명세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료비세액공제 계산에 적용할 갑의 2026년도 총급여액은 ₩120,000,000이라고 가정한다.

구분	지급 내용	금액
배우자	난임시술비	₩3,000,000
	산후조리원 비용	₩2,500,000
모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600,000
	국외 의료기관 의료비	₩2,000,000
장남	질병치료비*	₩5,000,000
장녀	정밀건강진단비	₩3,000,000

* 질병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4,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갑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출내역	금액
배우자	교육대학원 수업료	₩6,500,000
장남	대학 등록금과 수업료*1)	₩9,500,000
차남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특수교육비*2)	₩6,000,000
	미술 교습 학원의 학원비*3)	₩2,400,000
	사설 수학 학원의 학원비	₩1,300,000
	교육과정의 현장체험학습비	₩600,000
	교복구입비용	₩800,000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3,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1,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있음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 ~⑤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10점)

구분	금액
근로소득금액	①
기타소득금액	②
자녀세액공제	③
의료비세액공제	④
교육비세액공제	⑤

<자료 4> 다음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의 등기된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1. 갑은 2019.4.24.에 취득한 주택을 2026.5.23.에 아들에게 ₩2,400,000,000(시가 ₩2,500,000,000)에 양도하였다. 갑은 아들에게 주택양도에 관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2.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000,000,000이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000,000,000이다.

3. 주택 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0,000을 지급하였으며, 주택의 리모델링비용으로 ₩200,000,000을 2019.5.10.에 지급하였다.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다.

4.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보유기간 중 투기지정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으며, 갑은 2021.4.30.부터 2026.4.29.까지 거주하였다.

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5년 이상 6년 미만	20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7년 미만	24 %	6년 이상 7년 미만	24 %
7년 이상 8년 미만	28 %	7년 이상 8년 미만	28 %
8년 이상 9년 미만	32 %	8년 이상 9년 미만	32 %

6. 소득세의 기본세율표는 <자료 1>을 이용한다.

물음 4) <자료 4>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 ~ ②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6점)

구분	금액
양도차익	①
양도소득산출세액	②

【문제 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한국의 2026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6.4.1. ~ 2026.6.30.)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단, 제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자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1. (주)한국은 2026.4.6.에 제품A(원가: ₩8,000,000, 시가: ₩10,000,000)를 2개 생산하여 1개는 특수관계인인 (주)대한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1개는 특수관계없는 (주)세무에게 ₩7,000,000에 공급하였다.

2. (주)한국은 2025.12.10.에 제품C를 다음과 같은 대금결제조건으로 생산하여 직수출하기로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6.10.에 약정대로 제품C를 선적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

구분	2025.12.10. (계약일)	2026.3.10. (중도금수령일)	2026.6.10. (선적일)	2026.6.30.
수령액	$10,000	$10,000	$10,000	-
기준환율(₩/$)	1,200	1,300	1,400	1,500

(주)한국은 계약일에 받은 $10,000는 당일 ₩11,500,000으로 환가하였고, 중도금으로 받은 $10,000와 잔금 $10,000는 2026년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3. (주)한국은 2026.3.20.에 (주)우리에게 제품D를 생산하여 ₩40,0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잔금수령일에 인도)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0을 수령하였으나, 2026.4.2.에 (주)우리와 합의하여 동 일자를 변경계약일로 하여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변경계약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제품D는 변경된 잔금수령일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구분	당초 계약상 수령일	변경 계약상 수령일	금액
계약금	2026.3.20.	2026.4.2.	₩4,000,000
중도금	2026.5.20.	2026.6.5.	₩18,000,000
잔금	2026.7.20.	2026.10.5.	₩18,000,000

4. (주)한국은 (주)민국에게 제품F를 다음과 같이 검수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였다.

공급가액	내국신용장개설일	인도일	검수일	대금수령일
₩50,000,000	2026.5.10.	2026.6.30.	2026.7.4.	2026.7.4.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6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6.4.1. ~ 2026.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해당란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시오.) (8점)

<자료 1>의 항목번호	과세표준	매출세액
1		
2		
3		
4		

<자료 2> 다음은 과세사업(과일통조림 제조판매사업)과 면세사업(과일판매사업)을 겸영하는 (주)한국(중소기업)의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단, 2026년 제1기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계
2025년 제2기		₩1,200,000,000	₩400,000,000	₩1,600,000,000
2026년 제1기		1,314,000,000	486,000,000	1,800,000,000
2026년 제2기	7.1. ~ 9.30.	700,000,000	300,000,000	1,000,000,000
	10.1. ~ 12.31.	796,000,000	404,000,000	1,200,000,000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A와 부수토지를 2026.10.1.에 ₩539,5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12.10.에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이 금액은 상기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건물A와 부수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단, 건물A는 취득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취득일(2020.1.1.) 이후 사용면적비율(과세사업 60%, 면세사업 40%)은 변동이 없다. 양도일 현재의 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1)	기준시가*1)	감정가액*2)
건물A	₩250,000,000	₩200,000,000	₩250,000,000	₩300,000,000
토지	100,000,000	100,000,000	150,000,000	160,000,000

*1) 2026.10.1. 가액임

*2) 2025.12.20.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임

3.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2026년)

구분	제1기	제2기	
		7.1. ~ 9.30.	10.1. ~ 12.31.
과세사업	₩43,000,000	₩23,000,000	₩25,000,000
면세사업	22,000,000	15,000,000	18,000,000
공통매입세액1*1)	6,000,000	10,000,000	12,000,000
공통매입세액2*2)	24,000,000	20,000,000	16,000,000
계	₩95,000,000	₩68,000,000	₩71,000,000

*1) 기계장치1(2026.3.11. 취득), 기계장치2(2026.7.10. 취득) 및 기계장치3(2026.10.2. 취득)의 매입세액으로서 취득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B의 신축공사를 2026.1.2.에 착공하여 2026.12.20.에 완공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단, 건물B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2는 예정사용면적비율(과세사업 70%, 면세사업 30%)로 안분계산하였으며, 2026.12.20.에 실제사용면적(과세사업 65%, 면세사업 35%)이 확정되었다.

4. 202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일의 매입과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 (주)한국은 과일의 매입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이며,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2026.7.1. ~ 2026.9.30.	2026.10.1. ~ 2026.12.31.
기간초일 과일재고액	₩13,000,000*1)	₩31,200,000
과일 매입액	187,760,000	201,688,000
과일 판매로 사용	64,000,000	61,600,000
과일통조림 원료로 사용	105,560,000	134,888,000
기간말일 과일재고액*2)	₩31,200,000	₩36,400,000

*1) 2026년 제1기말 과일재고액으로서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2026년 제1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한도 이내임), 202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26.7.1. ~ 2026.9.30.) 중 과일박스에 포장하여 전부 과일로 판매하였다.

*2)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5. 2025.10.5.에 공급가액 ₩50,000,000의 운반용 트럭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 답안 양식에 해당 항목(① ~ ⑤)을 제시하시오. (12점)

구분				예정신고시	확정신고시
매출세액			㉮		①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1)		
	의제매입세액		(2)	②	③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면세사업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4)	④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6)		
		계 (3) + (4) + (5) + (6)	(7)		⑤
	차가감계 (1) + (2) - (7)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답안 양식>

해당 항목번호	금액
①	
②	
③	
④	
⑤	